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76
----------	-------

발의연월일 : 2025. 8. 5.

발 의 자 : 최은석 · 김선교 · 이종배
구자근 · 김승수 · 유상범
추경호 · 한지아 · 김상훈
박수영 · 김기웅 · 김장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20%를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그런데, 최고 세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세 부담이 적용되고 있어, 납세자의 세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배우자 간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과세가 이뤄지는 경우 생존 배우자의 노후 안정성과 유족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혼인 공동체 내에서 이미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다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하는 등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63조제3항 삭제, 제12조제8호 및 제46조제11호 신설, 제19조 및 제53조제1호 삭제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제13조제1항제1호 중 “상속인에게”를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에게”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를 “제3호까지에”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9조부터”를 “제20조부터”로 한

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제19조부터”를 “제20조부터”로 한다.

제26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30억원 초과	5억9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제44조의 제목 중 “배우자 등에게”를 “직계존비속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를 “직계존비속에게”로, “배우자등이”를 “직계존비속이”로, “배우자등의”를 “직계존비속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배우자등에게”를 “직계존비속에게”로, “배우자등이”를 “직계존비속이”로, “배우자등의”를 “직계존비속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배우자등이”를 “직계존비속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배우자등에게”를 각각 “직계존비속에게”로 한다.

제46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제47조제3항 본문 중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을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제5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63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및 배우자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8호, 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제3호,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4조 및 제2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상속세 세율 및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및 증여재산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제46조제11호, 제47조제3항 및 제5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 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 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 ----. 1. ~ 7. (현행과 같음) <u>8.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u> <u>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u> <u>받은 금액</u>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 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 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 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u>상속인에게</u> 증여 한 재산가액 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 ----- ----- ----- ----- ----- ----- 1. ----- ----- <u>상속인(배우자는</u> <u>제외한다)에게</u> -----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

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 ④ (생략)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는 공과금 등) ① -----

-----.

1.·2. (현행과 같음)

3.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
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
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
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
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
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
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
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
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
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
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
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
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
을 공제한다.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 4. (생략)

② · ③ (생략)

제21조(일괄공제) ①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

-----.

-----제

3호까지에-----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일괄공제)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

-----제20

조부터-----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 3. (생략)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생략)

② (생략)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

1. ~ 3. (현행과 같음)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

-----.

1. -----
----제20조부터-----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상속세 세율) -----

-----.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30억원 초과	5억9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제44조(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직계존비속에게-----

직계존비속이-----
-----직계존비속의-----.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직계존비속에
계-----

-----직계존비속이-----

-----직계존비속의-----

-----.

-----직계
존비속이-----

③ -----

-----.

1. ~ 4. (생략)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10. (생략)

<신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

1. ~ 4. (현행과 같음)

5. 직계존비속에게-----

④ -----직

계존비속에게-----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

1. ~ 10. (현행과 같음)

1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

산의 가액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직계존

비속-----

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

-----.

<삭 제>

2. ~ 4. (생략)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 4. (현행과 같음)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